

##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석탄재

4. 폐타이어[대형타이어(보조가탄재, 고무분말,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, 철심(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은 제외한다]

제4조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0년 7월 1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0년 7월 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과 조치)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

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수입금지 품목)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수입금지 품목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석탄재</u></p> <p>4. <u>페타이어[대형타이어(보조가 탄재, 고무분말,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, 철심(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은 제외한다]</u></p>
<p>제4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재검토기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0년 7월 1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</p>	<p>제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0년 7월 1일</u> -----</p> <p>-----</p>

점(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